

## 영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와 함의

강성호 연구위원, 류건식 선임연구위원

-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수수료 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낮음
  - 이에 본고는 영국,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-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로 구성되는 제도운영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되며, 운용관리수수료(0.05~0.6%)가 자산관리수수료(0.1%~0.5%)보다 다소 높음
  - 퇴직연금은 규모의 경제(대규모 사업장이 수수료 낮음), 장기계약(할인율은 3~15%), 개인추가 납입에 대한 특별 할인(수수료 면제 혹은 우대적용) 등을 고려하여 할인을 적용함
  - 수수료를 포함한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2017년 기준 0.45%이며, 제도유형별로는 DC/기업형IRP형이 0.58%로 가장 높고, DB형이 가장 낮음
- 영국 DWP(Department for Work & Pension)는 2015년 4월부터 수수료 상한선을 0.75%(적립금 대비)로 설정하고, 계약형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수료<sup>1)</sup>를 금지하는 등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함
  - NEST 제도의 디폴트상품으로 Retirement Date Fund가 있으며, 여기에는 수익률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수수료는 낮아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
  - 영국은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이고, 수수료는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
- 호주는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Cooper Review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새로 운 형태의 단순화된 디폴트옵션을 제안함
  - 호주 금융투자협회(Financial Service Council)에 의하면, MySuper의 평균수수료가 2009년 0.92%에서 2013년 0.73%로 0.19%p 낮아졌으며, 이에 반해 수퍼에뉴에이션 펀드(수퍼펀드)는 1.12% 수준임
-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현행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  - 수수료 결정에 있어 ①수수료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, ②취약계층의 퇴직연금 가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을 강화하고, ③디폴트펀드 등 수익률과 수수료를 동시 에 고려하는 상품 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

## 1. 검토배경



-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수수료 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낮음
  -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.88%로 OECD 평균 6.6%²)와 비교하여 매우 낮아 수익률 제고에 대한 관심은 높음
    - 2012년까지 퇴직연금수익률은 4~5%대였지만 2013년 이후 2%대에서 2017년 1.88%로 감소함
  -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고이율이 보장되었을 때는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, 2013년
     이후 금리 하락과 함께 수수료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함3)
    -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사업자평가사업 등을 통해 수수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<sup>4)</sup>
- 퇴직연금 운용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통해 평가되는데,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고려된 실질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기입자의 체감 수익은 더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  - 2017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0.45%로 나타났으며, 이를 바탕으로 1.88%의 연간수익률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   - 총비용부담률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비용(수수료(운용·자산관리)+펀드비용5))을 퇴직연금 적립 금으로 나누어 산출됨
- 0에 본고는 영국,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<sup>1)</sup> 컨설팅 수수료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수료임

<sup>2) 2017</sup>년 기준 OECD 33개 국가의 퇴직연금 가증평균수익률임(OECD(2018), Pension Market in focus 2018, p. 19)

<sup>3)</sup> 근로복지공단,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, p. 87(김성일, 퇴직연금수수료 합리화 방안 참조)

<sup>4)</sup> 고용노동부(2018.11.9), 「2018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」 결과 발표 참조

<sup>5)</sup> 펀드비용은 펀드보수(fee)와 펀드수수료(commission)로 구성되며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임

## 2.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평가



#### 가.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

#### 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로 구성되는 제도운영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됨

-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되며,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함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(이하 퇴직급여법) 제28조 제1항, 제29조 제1항)
  - 운용관리업무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,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(計理)이,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,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 등이 해당됨
  - 자산관리업무는 계좌의 설정 및 관리, 부담금의 수령,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,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, 급여의 지급 등이 해당됨
- ◎ 기타 수수료는 중도해지, 계약이전, 가입자 교육에 따른 수수료이나 현재 대부분 부과되지 않음?)
-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모두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8)(퇴직급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, 제10조 제2항, 제19조 제2항)
  - 다만, 본인부담분과 퇴직 후 적립된 개인형 IRP의 적립금 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함

〈표 1〉 제도유형별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

제도유형	운용관리수수료	자산관리수수료	
DB형	사용자 (적립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납입)	좌동	
DC형/기업형 IRP 사용자(별도납입)		좌동	
개인형 IRP	가입자(적립금에서 차감)	좌동	

자료: 한국투자증권(2014), 퇴직연금실무해설서

# ■ 퇴직연금 수수료를 유형별로 보면 운용관리수수료는 0.05~0.6%, 자산관리수수료는 0.1%~0.5%로 운용관리수수료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◎ 유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적립금 규모에 따른 할인효과로》 인해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는 감소함

<sup>6)</sup>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

<sup>7)</sup> 한국투자증권(2014), 퇴직연금실무해설서, p. 258

<sup>8) 2013</sup>년 7월 25일까지는 DC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협의에 의해 가입자에게도 부담될 수 있었음

<sup>9) 2014</sup>년 기준 미국 401(k) 플랜의 경우(평균 수수료율 0.39%)도 자산규모가 클수록 수수료율은 낮음. 즉, 자산규모 100 만~1,000만 달러의 경우 1.14%,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플랜의 경우 0.25%임

- 이러한 현상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볼 수 있으나,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한 중소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저해할 우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을 시사함

#### 〈표 2〉 적립금 규모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 현황

(단위: %)

적립금 규모 수수료유형	<sup>~</sup> 5억	<sup>~</sup> 50억	<sup>~</sup> 500억	~1,500억	전체
운용관리	0.1~0.6	0.1~0.45	0.1~0.45	0.05~0.4	0.05~0.6
자산관리	0.1~0.5	0.1~0.5	0.1~0.45	0.1~0.45	0.1~0.5

주: 1) DB, DC(사용자부담액), IRP(퇴직급여를 이전한 금액)를 통합하여 수수료 범위를 제시한 것임자료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8. 7. 18) "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"

#### ■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은 규모의 경제 외 장기계약, 개인추가 납입에 대한 특별 할인도 존재함

- 2012년 10월 도입된 장기계약 할인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<sup>10</sup>
  - 할인 기준 및 할인율은 사업자별·계약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년차부터 5년차까지 적용되고 할 인율은 3~15% 수준(일반적으로 2차년도 10%, 3차년도 12%, 4차년도 이후 15% 수준)
- IRP의 경우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우대적용을 통해 할인되는 경우도 있음11)
  -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,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,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, 연 금지급 시 등에 수수료 우대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음
  - IRP 적립금 1억 원 미만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는 0.17%(면제하는 사업자를 제외 시 0.19%), 자산 관리수수료는 0.20%(면제하는 사업자를 제외 시 0.22%) 할인됨

## ■ 수수료를 포함한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2017년 기준 0.45%이며, 제도유형별로는 DC/기업형RP가 0.58%로 기장 높고 DB형이 가장 낮음

- 수수료 외 비용인 펀드비용은 펀드보수(fee)¹²)와 펀드수수료(commission)¹³)로 구성되는데 이는 실적 배당형에서 펀드 구입 시 드는 추가적 비용이므로 전체 비용에서 10%이하여서(원리금보장형에 90% 투자) 퇴직연금의 총비용은 대부분 수수료로 볼 수 있음
- 〈표 3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유형별로는 DB형의 총비용부담률이 낮은데, 이는 적립금 규모에 따른 수수료 할인, 펀드 편입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14)

<sup>10)</sup> 근로복지공단,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, p. 87(김성일, 퇴직연금수수료 합리화 방안 참조)

<sup>11)</sup>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8. 12. 17), "금융꿀팁 200선 - ⑩ 연말연시,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"

<sup>12)</sup> 펀드보수는 판매·운용·수탁·사무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부담됨

<sup>13)</sup> 펀드수수료는 펀드 매입 시 판매수수료, 환매 시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있으며,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, 판매회사, 투자 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음

#### 〈표 3〉 제도유형별 총비용부담률 현황

(단위: %)

구분	DB	DC/기업형IRP	개인형IRP	전체
2015년	0.46	0.62	0.40	0.49 (2.15)
2016년	0.38	0.62	0.46	0.45 (1.58)
2017년	0.40	0.58	0.44	0.45 (1.88)

주: 1) 적립금 가증평균값 2) ( )안은 연간 투자수익률

자료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6), "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"

### 나. 퇴직연금 수수료 평가

-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의 절대액 수준은 높지 않으나 포괄적 수수료 체계의 문제 등 수수료 체계 내실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
  - 현재 퇴직연금 수수료는 세부 구성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포괄적 체계로 되어 있어 운영관리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임
  - →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수수료 할인은 있으나, 중소기업, 저소득 IRP 가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할인
     이 취약하여 추가적 가입 유인이 약함
  - 현행 수수료 산정이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절대액은 증가하는 구조임

## 3. 영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평가15)



## 가. 영국의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과 평가

■ 영국 DWP(Department for Work & Pension)는 2015년 4월부터 수수료 상한선을 0.75%(적립금 대비)로 설정하고, 계약형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수료<sup>16)</sup>를 금지하는 등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함<sup>17)</sup>

<sup>14)</sup> 근로복지공단,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(김재현,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)

<sup>15)</sup> 영국과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가장 발달한 대표적인 벤치마킹 국가임

<sup>16)</sup> 컨설팅 수수료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수료임

<sup>17)</sup> Department for Work & Pensions(2017), "Pension Charges Survey 2016: Charges i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," p. 15

- 수수료 상한인 0.75%는 적격 DC형 퇴직연금(qualifying DC workplace pension schemes, 이하 적 격DC형제도)의 디폴트상품에 적용됨
  - DC형에서 디폴트상품의 선택이 90%여서 수수료 상한선은 전체수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
  - 적격DC형제도에 디폴트상품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80%가 투자한 펀드를 디폴트로 간주하여 상한 선을 적용함<sup>18)</sup>

〈표 4〉 제도유형별 영국 퇴직연금의 연간 수수료(Annual Ongoing Charge) 현황

(단위: %)

기업규모	적격(Qualifyir	ng schemes)	비적격(Non-qualifying schemes)	
八百卅五	계약형	신탁형	계약형	신탁형
1~5인	0.72	0.72	0.94	0.92
6~11인	0.69	0.66	0.92	0.92
12~99인	0.65	0.61	0.88	0.87
100~999인	0.56	0.44	0.78	0.66
1,000인 이상	0.45	0.37	0.86	0.61
전체	0.54	0.38	0.86	0.70

주: 수수료(Annual Ongoing Charge)는 적립금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며, 여기서는 AMDs<sup>19)</sup>, consultancy charges, initial and trail commission and flat fees로 구성됨

자료: Department for Work & Pensions(2017), "Pension Charges Survey 2016: Charges i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," p. 46

- DWP(2017)에 의하면 영국의 수수료는 비적격제도 중 계약형 전체와 소규모 사업장의 신탁형(기금형)에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
  - 상한선(0.75%)을 적용받는 적격제도에서 계약형의 수수료는 0.54%, 신탁형은 0.38%으로 나타남
  - 반면 수수료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비적격제도에서 계약형의 수수료 평균은 0.86%, 신탁형은 0.70%로 나타났으며, 계약형은 모두 수수료 상한을 넘었으나 신탁형의 경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상한선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됨
- 2015년 4월에 적격DC형제도 중 계약형에 대해 가입자에게 받던 컨설팅 수수료를 금지하였으며,20) 2016년 4월부터는 기금형까지 확대함<sup>21)</sup>

#### ■ 영국의 NEST<sup>22)</sup> 제도에는 자동기입 근로자를 위한 디폴트상품으로 Retirement Date Fund가 있으며, 여기에는

<sup>18)</sup> 근로복지공단,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(김재현,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)

<sup>19)</sup> Active Member Discounts(AMDs)로 수수료 할인 부분임

<sup>20)</sup>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됨(근로복지공단,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(김재현,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))

<sup>21)</sup> Department for Work & Pensions(2017), "Pension Charges Survey 2016: Charges i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," p. 15

#### 수익률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수수료는 낮아 영세시업장의 시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됨

- NEST Retirement Date Funds의 자산규모는 17억 파운드<sup>23)</sup>(약 2조 4천억 원), 수익률 목표는 소비자 물가상승율에 추가 3%(임의적임)로 하고 있음
- 5년 연평균 수익률은 1.9% ~ 11.4% 범위에 있으며, 수수료 수준은 전체 적립금 기준 50 bp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

〈표 5〉 NEST Retirement Date Funds의 수수료 등

자산규모	수익률 목표	5년 연평균 수익률	수수료율
17억 파운드 (약 2조 4천 억 원)	CPI + 3% (임의적)	1.9% ~ 11.4%	<ul><li>투자자산대비 3 bp</li><li>보험료대비 180 bp</li><li>전체 적립금대비 50 bp</li></ul>

자료: OECD Pensions Outlook 2018, p. 98를 기초로 재정리함

- 향후 NEST 적립기금이 충분히 쌓일 경우 관리수수료만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여 금 운용 수수료인 1.8%는 향후 면제될 것으로 예상됨<sup>24)</sup>
- 종합적으로 보면 영국은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이고, 수수료는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<sup>25)</sup>
  - ◎ 영국의 연간 명목수익률을 보면 금융위기 이전인 2002년~2008년 동안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변동이 심하였으나, 이후 2016년(13.7%)까지 두 자리 수익률을 보이는 등 수익률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
  - 이에 반해 영국은 수수료 규제 조치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음
    - 연간수수료(Annual Management Charges, AMC<sup>26)</sup>)는 2002년 0.79%에서 2016년 0.57%로 14 년 동안 22%p 감소함
    - 수수료 인하가 가능했던 주요 요인으로 관리자산의 증가, 사업자의 백오피스 시스템 현대화, 정부 간 섭27)에 따른 수수료 벤치마크 인하 등임.
  - 한편, 수수료(fees and charges) 인하의 이론적 배경에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연금급여에 영향을 미치며, 저소득 가입자의 급여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함<sup>28)</sup>

<sup>22)</sup> DC형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(Opt-Out)을 전제로 2012년부터 실시됨

<sup>23)</sup> 영국 파운드 환율은 1.421.75원(2019.1.5일 기준)

<sup>24)</sup> 근로복지공단,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, p. 204(영세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운용과 시사점)

<sup>25)</sup> OECD Pensions Outlook 2018, p. 98

<sup>26)</sup> AMC에는 판매비용, 제도운영 및 자산관리 비용이 모두 포함됨

<sup>27)</sup> 연금노동부(DWP)와 금융감독원(FCA)가 1% 이하로 수수료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대상 금융기관의 80% 이상이 1% 이하의 수수료를 설정하게 됨

<sup>28)</sup> OECD Pensions Outlook 2018, p. 80

- OECD(2018)에 의하면 퇴직연금 수수료율이 1.5%(0.75%, 0.5%) 감소 시 적립금은 약 29.9%(16.5%, 11.4%)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비용 구조가 연금적립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<sup>29</sup>)

〈표 6〉 영국의 연도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

연도	명목수익률	명목수익률 (수수료 적용 후)	순수익률 (수수료 및 물가상승률 적용)	<del>수수</del> 료(AMC)
2002	-13.3	-14.1	-15.8	0.79
2004	12.1	11.3	9.7	0.79
2006	11.4	10.6	7.6	0.76
2008	-11.4	-12.1	-15.1	0.73
2010	13.6	12.9	9.3	0.69
2012	10.5	9.9	7.3	0.65
2014	5.1	4.6	4.1	0.55
2016	13.7	13.1	11.5	0.57

자료: Pension Savings-The real return 2018 Edition, Better Finance, EC

## 나,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과 평가

- 호주는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Cooper Review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새로운 형태의 단순화된 디폴트옵션을 제안형<sup>80)</sup>
  - 이를 통해 호주는 수수료를 표준화한 MySuper펀드가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, 기존 슈퍼에뉴에이션의 디폴트펀드들을 대체함31)
    - MySuper펀드는 투자성과, 보장범위 등에 따라 비용이 차별화되나, 불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을 간결하게 구성함으로써 저비용구조로 설계됨
  -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투자상품 간 비교가 더 용이해졌으며, 수퍼에뉴에이션 펀드(수퍼펀드)간 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(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: APRA)
    - APRA는 MySuper에 대한 모든 정보(운용 수수료, 데이터 비용, 해당 펀드의 경로)를 수집하여 타연금펀드와의 비용·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실적 일람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금산업 내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32)

<sup>29)</sup> better workplace pensions: a consultation on charging: OECD Pensions Outlook 2018, p. 81을 참조함. 분석가정으로 보험료는 임금의 10%, 연간임금상승률은 3.8%(인플레 2%, 생산성증기률 1.8%), 납부기간은 40년, 투자수익률은 7%임

<sup>30)</sup> 근로복지공단,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, p. 73

<sup>31)</sup> 근로복지공단,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, p. 87(박희진, 호주 퇴직연금제도와 시사점 참조)

- MySuper 도입 후 비용절감 노력으로 기존의 수퍼펀드에 비해 MySuper펀드의 수수료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<sup>33)34)</sup>
  - 호주 금융투자협회(Financial Service Council)에 의하면, MySuper의 평균수수료가 2009년 0.92%에서 2013년 0.73%로 0.19%p 낮아졌으며, 이에 반해 수퍼펀드는 1.12% 수준임
- MySuper Industry level의 수수료는 Target Date Fund(TDF)와 마찬가지의 Lifecycle 형태로 운영되며 수익률을 고려할 때 체감수수료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시됨
  - MySuper의 자산규모는 4,740억 호주달러<sup>35)</sup>(약 377조 원), 수익률 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
  - 5년 연평균 수익률은 6.6% 범위에 있으며, 수수료 수준은 전체 적립금 기준 50 bp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
  - 한편 수수료 등 비용이 높더라도 수익률이 높다면 수수료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음
    - Parwada and Faff(2005)에 의하면 호주에서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비용 측면보다 최근 5년간 시장 벤치마킹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지를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음을 주장함36)

〈표 7〉 MySuper - Industry level의 수수료 등

자산규모	수익률 목표	5년 연평균 수익률	수수료율
4,740억 호주달러 (약 377조 원)	СРІ	6.6%	- 투자자산대비 49 bp - 가입자당 연간 행정수 수료(administration fee)는 87호주달러 - 전체 적립금대비 50 bp

자료: OECD Pensions Outlook 2018, p. 98를 기초로 재정리함

<sup>32)</sup> 이태호·김원식·김재현·신성환(2011), 영국의 장기저축, 투자장려 정책 및 시사점; 퇴직연금 단일화 필요성 및 효과와 주요 해외사례 연구, 고용노동부

<sup>33)</sup> 근로복지공단,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, p. 15

<sup>34)</sup> 근로복지공단,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, p140 (박희진, 호주 퇴직연금제도와 시사점)

<sup>35)</sup> 호주달러 환율은 795.42원(2019.1.5일 기준)

<sup>36)</sup> 김재현(2010),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사업 효율성 연구, 보험금융연구 60권, 보험연구원, pp. 73~102

## 4. 결론 및 시사점



-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의 절대액 수준은 높지 않으나, 제도내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수료 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
- ➡ 첫째, 현재 퇴직연금 수수료는 포괄적 형태로 결정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세부항목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  - 운영관리, 자산관리 등 통합적 및 획일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되므로 가입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
     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세부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수료가 책정될 필요가 있음
- 둘째, 퇴직연금 가입유인 제고를 위해 NEST 시례 등을 참고하여 개인형 IRP 가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 -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에 전반적으로 총비용부담률은 인하되었지만 개인형 IRP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
  - 특히, IRP 가입자는 수수료 전액을 직접 부담하므로 수수료로 인해 추가 가입 유인이 줄어들고 퇴직소득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
- 셋째, 실적배당형에 투자할수록 펀드비용 발생 등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라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
  - 영국 Retirement Date Fund, 호주 MySuper와 같이 펀드바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검토하여 수수료 부담을 수익제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kiqi